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1300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변론 종결 2023. 6. 28.

판결 선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7.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586,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86,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25332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E에게 12,632,552원 및 그 중 3,833,883원에 대한 201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3.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F 등을 거쳐 2021. 1. 22.경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2022. 3. 22.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 3) 이 사건 채권은 2022. 7. 8. 기준 원리금 합계 19,586,060원 및 그 중 원금 3,833,883원에 대하여 2022.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 1) G은 2021. 7. 20.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H, I, J,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 2) 망인은 1997. 2.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및 H, I, J,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피고는 2022.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03. 12. 27. 마쳐진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인 근저당권, ②2004. 8. 31. 마쳐진 채권최고액 28,8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인 근저당권, ③2006. 8. 22. 마쳐진 채권최고액 15,6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인 근저당권, ④2015. 4. 9. 마쳐진 채권최고액 15,6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22. 5. 12.경 위 ① 2003. 12. 27.자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2022. 5. 10.경 위 ② 2003. 12. 27.자, ③ 2006. 8. 22.자, ④ 2015. 4. 9.자 각 근저당권은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인 2021. 7. 20.경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C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로서, 피고가 62년간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23년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경우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이 사건과 같이 수익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이 일치한다)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취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94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40,000,000원(= 180,000,000원 + 28,800,000원 + 15,600,000원 + 15,600,000원)을 제한 나머지 700,000,000원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27,272,727원(= 700,000,000원 × 2/11,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과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채권 19,586,060원 중 적은 금액인 19,586,060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위 19,586,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586,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래

별지

1) 원고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